

학부모 권리 및 책임 장전

각 아동의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학부모¹ 및 교육 커뮤니티의 협력관계를 통해 가장 잘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부모님들과 학교 사이의 적극적인 참여를 함양하기 위해 학부모님들은 일정한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1) 무료 공립 교육을 받을 권리

학부모님은 안전하고 협조적인 학습 환경이 제공되는 공립학교의 무상 교육의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 a) 유치원에서 21세가 될 때까지 또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때 까지 중 우선적으로 실현되는 상황에 따라 법률이 정한대로 자녀를 무료로 공립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b)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는지의 평가와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무료로 3세에서 21세의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 c) 법률과 규정에 요구되는 바와 같이 자녀의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일 경우, 이중언어 교육 또는 제 2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을 자녀가 받을 수 있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 d) 자녀가 교육청 학교 학년도 일정에 부합하는 모든 수업 일정을 이수하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 e) 자녀가 차별, 괴롭힘, 왕따 및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하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 f) 자녀가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종, 피부색, 종교, 나이, 신념, 민족, 출신 국가, 국적, 시민권 취득 상태,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성) 또는 몸무게에 관계 없이 타인으로부터 예의와 존중을 받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g) 자녀가 뉴욕시 교육청의 뉴욕시 차원의 중재 및 징계 측정 표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학생 권리와 의무 조항(Bill of 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에 명시된 모든 자격을 부여 받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2) 뉴욕시 교육청과 산하 학교들은 학부모님에게 교육 프로그램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 a) 교육감 규정 A-663 에 따라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교육청과의 원활한 대화를 위하여 언어적 지원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b) 학교, 학군 및/또는 보로 레벨에서 부모와의 상담이 요구되는 모든 정책, 계획과 규정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c) 학교 시스템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관련 최신 정보, 해당 서비스 자격 요건 및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 통학교통, 급식 서비스, 보건 서비스, 영어학습학생(ELL) 수업, 치료 교육, 특수 교육 등등);
- d) 필수적인 보건, 인지 및 언어 선별 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e) 교육 프로그램, 출석 및 품행과 관련하여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기대치에 대한 문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f) 자녀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 사용될 성적 평가 기준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¹ 이 문서에서 지칭하는 학부모는 학생의 부모, 보호자, 또는 학생에게 부모나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그 외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 g) 수업 과목 또는 커리큘럼 뿐만 아니라 자녀의 수업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h) 교육감 규정 A-820 에 따라 자녀의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기밀 유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i)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자녀의 교육 기록에 관한 정보를 받아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j) 자녀의 교육 기록에 대한 설명을 담당 교직원에게서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예약을 하고 이런 요청을 한 후 적절한 시간 내에 관련 면담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k) 교육감 규정 A-820 에 따라 자녀의 교육기록을 외부 기관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상급 학교 및 모병 담당 기관에 연락처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l) 자녀의 교육 기록을 자녀가 전학할 다른 학교로 적절한 시간 내 보내지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 m)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 (FERPA: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과 교육감 규정 A-820 에서 동의 없는 공개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의 교육기록부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식별 정보의 공개에 대해 동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을 허락하는 한 가지 예외는 본인의 직업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학생의 교육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학교 관계자에게 공개하는 경우입니다. 뉴욕시 교육청의 직원을 포함한 학교 관계자는 학교의 행정인으로 고용된 사람, 수퍼바이저, 교사, 또는 기타 교육 지원 직원이나 교직원 및 뉴욕시 교육청이 다른 상황에서는 소속 직원을 활용할 수행 서비스 또는 역할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 (에이전트, 계약직 또는 컨설턴트 등)이 포함됩니다.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이 허락되는 또 다른 예외는 자녀분이 등록을 검토하거나 등록을 계획하고 있거나 자녀분의 등록이나 전학을 목적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학교 학교의 관계자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 n) 학교가 FERPA 의 요구조건에 응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미국 연방 교육부에 항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FERPA를 시행할 기관의 이름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연방 교육부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8520

- o) 재정 지원을 신청과 함께 학생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교육청에 자녀분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를 알리는 것을 배제할 수 있으며 자녀분의 이름, 생년월일 및 학년 (예, 9학년)을 내셔널 스튜던트 클리어링하우스(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대학 등록과 졸업 정보를 교육청에 제공해주는 기관)에 알리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3)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학부모님은 자녀의 교육에 관련된 모든 의미 있는 참여의 기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 a) 자신들의 학교 커뮤니티에서 환영 받고, 존경 받으며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b) 모든 학교 직원으로부터 존중 받고 인종, 피부색, 신념, 종교, 출신국, 성별, 연령, 민족적 배경, 국적/시민권 취득 상태 신분, 결혼 상태,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성별 인식, 장애와 상관 없이 모든 권리를 부여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c) 정기적인 문서 및 구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교사 및 교직원과의 대화에 참여하여 자녀의 학습 진전, 사회성 및 품행상의 개선에 관한 염려와 관심 사항을 상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d) 확정된 절차에 맞게 자녀의 담임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을 방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e) 학년 중 학교에서 자녀의 학습 진전 상황에 대해 토의하고, 적절하다면, 다른 학교 직원들과 만날 기회를 가지기 위해 의미 있고 생산적인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f) 정기적으로, 비공식 및 공식적인 성적표를 통해 자녀의 학업 및 품행에 대해 통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g) 교육감 규정 A-443 및 규율규정에 제시된 대로 자녀가 징계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적합한 징계절차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h)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의 학교 리더십 팀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i) 자녀와 관련된 심의, 회의, 인터뷰 및 기타 회의에 학교 직원이나 행정인의 예비 승인 없이 기존 절차에 따라, 친구, 조연자 또는 통역사를 동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j) 학부모님이 청각 장애인일 경우, 자녀가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학습 또는 규율에 관련한 모든 회의 또는 활동에 참여할 때 사전 서면요청을 하면 수화통역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화통역사 제공이 여의치 않을 때는 다른 적절한 대체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k) 학교 직원들이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학부모 회 또는 학부모 교사회 회의, 학교 리더십 팀 회의,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회의와 같은 중요한 통지 내용을 학부모님에게 제공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 l) 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 없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회 또는 학부모 교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m) "부모의 권리 및 책임 장전", "학생의 권리 및 책임 장전"을 포함한 "뉴욕시 중재 및 징계 방법 표준" 및 학교 차원의 상세한 정책의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n) 학교 차원의 각종 위원회 (예: 안전, 영양, C-30 레벨 I)에 적용되던 참여 지침에 부합하여 학교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o) 법률 및 교육감 규정 D-140, D-150 그리고 D-160 에 의거하여, 커뮤니티 또는 뉴욕시 교육 위원회에 입후보 자격이 있는 경우, 후보로 출마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 p) 뉴욕시와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회의와 공개 회의 법 ("선샤인 로")와 수립된 절차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되는 교육 정책 패널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4)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한 항의 및 이의 제기에 관한 권리

교육감은 아동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항의 및 이의 제기를 확정하는 규정 및 정책을 공표했습니다. 이들 절차는 다음의 교육감 규정에 기술되어 있으며

<http://schools.nyc.gov/RulesPolicies/ChancellorsRegulations/default.htm> and the DOE's parent complaint procedures available at <http://schools.nyc.gov/Offices/FACE/KeyDocuments/Parent+Complaint+Procedures.ht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 a) 교육감 규정 A-101 에 따라 거주지에 의거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b) 교육감 규정 A-420 에 따라 단체 차별에 대해 항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 c) 교육감 규정 A-421 에 따라 언어 폭력에 대해 항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 d) 교육감 규정 A-443 에 따라 교장이나 교육감의 정학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e) 교육감 규정 A-450 에 따라 원하지 않은 전학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f) 교육감 규정 A-501 에 따라 진급관련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g) 교육감 규정 A-655 에 따라 학교 리더십 팀 선거에 관한 항의 및 이의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h) 교육감 규정 A-660 에 따라 학부모 회 또는 학부모 교사회 및 회장 위원회 선거, 분쟁, 조치 및 사건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불평을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 i) 교육감 규정 A-701 에 따라 예방접종 면제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j) 교육감 규정 A-710 에 따라 섹션 504 계획의 위탁, 평가, 계발, 그리고/또는 실행에 대한 항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k) 교육감 규정 A-780 에 따라 임시의 거주지에 기거하거나 홈리스인 아동의 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l) 교육감 규정 A-801 에 따라 교통편 제공 자격에 관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m) 교육감 교육감 규정 A-810 에 따라 무료 및 절감된 급식을 받을 자격에 관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n) 교육감 규정서 A-820에 따라 부정확하거나 허위거나 학생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아동의 기록 입력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o) 교육감 규정 A-830 에 따라 교육청 직원들의 차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p) 교육감 규정 A-831 에 따라 학생 대 학생의 성희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q) 교육감 규정 A-832 에 따라 학생 대 학생의 차별,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r) 교육감 규정 C-30에 따라 학교장 또는 교감의 선택 절차에 관한 불평을 접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 s) 교육감 규정 D-110의 정보자유법에 의거해 교육청이 관리하는 공공 기록에 대한 열람 거부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t) 교육감 규정 D-140에 따라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의 후보 추천 및 멤버 선출에 관한 불평을 접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 u) 교육감 규정 D-150에 따라 뉴욕시 특수 교육 위원회 또는 뉴욕시 75학군 위원회의 후보 추천 및 멤버 선출에 관한 불평을 접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 v) 교육감 규정 D-160에 따라 뉴욕시 고등학교 위원회의 후보 추천 및 멤버 선출에 관한 불평을 접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 w) 교육감 규정 D-170에 따라 뉴욕시 영어학습학생 위원회의 후보 추천 및 멤버 선출에 관한 불평을 접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 x) 자녀의 학교가 적절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녀를 학교나 수업에서 제외시킨 경우, 교육청의 항의절차에 따라 항의를 제기하거나 호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 y) 낙오아동방지법안에 따라 운영되는 다음 프로그램에 관해 교육청의 불평 신고 절차에 따라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타이틀 I 및 II, 파트 A 및 D, 타이틀 III 및 타이틀 IV, 파트 A 또는 위에서 나열된 교육감 규정에서 다루는 절차를 통해 제기될 수 없는 그 이외의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모든 학부모님들은:

- (1) 학습할 준비를 갖춰 자녀를 등교시킬 책임을 갖습니다;
- (2) 자녀가 정기적으로 지각을 하지 않고 학교에 등교시킬 책임을 갖습니다;
- (3) 학교 통지문 읽기, 자녀와 학교 생활에 관해 대화하기, 자녀의 과제와 진척 리포트를 검토하기 및 교직원과 상담하기 등을 통해 자녀의 과제, 진척도 및 문제점을 인지할 책임을 갖습니다;
- (4) 자녀의 교육 진척에 관하여 자녀의 교사 및 교장과 구두 의사교환 또는 서면 연락을 지속할 책임을 갖습니다;
- (5)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모든 학교의 정책과 적용되는 교육감 규정을 준수할 책임을 갖습니다;
- (6) 자녀의 학교와 적절한 시간 내에 의사교환을 하여 대응할 책임을 갖습니다;
- (7) 자녀에 관련하여 학교에서 요청한 모든 회의 및 컨퍼런스에 참석할 책임을 갖습니다;
- (8) 학교 건물에 정중한 태도로 들어오며, 무례한 행동을 삼가고, 모든 교직원들,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 커뮤니티의 그 외 일원들에게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 대해야 하는 책임을 갖습니다;
- (9) 정확한 연락 정보 (예: 집 주소, 전화번호)를 학교에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을 갖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또한:

- (1) 교육이 우선될 수 있는 지원적인 가정 환경을 제공해 주십시오.
- (2) 사회에서 효율적인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능력 및 가치를 취득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지도해 주십시오.
- (3) 학교에 시간, 능력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십시오.
- (4) 교육적인 결정에 학부모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 (5) 학교의 학부모 회 또는 학부모 교사회의 적극적인 멤버로 활동해 주십시오.
- (6) 적용되는 경우, 타이틀 I 학부모 위원회의 멤버로 활동해 주십시오.
- (7) 자녀에게 학교 과제, 출결상황 및 품행 그리고 학교에서 기대하는 바에 관해 질문해 주십시오.
- (8) 자녀에게 학교 기물, 안전 및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함과 협박, 괴롭힘 또는 차별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 지도해 주십시오.

실질적인 인종 또는 인지되는 인종, 피부색, 종교, 연령, 신념, 민족, 출신 국가, 외국인 신분, 시민권 소지 여부, 장애, 성적 취향, 성별(성) 또는 체중 등에 관계 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뉴욕시 교육청의 정책이다. 또한 성희롱과 상기 언급된 이유로 인한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운 업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교육청의 정책이다 .

관련법에 관한 질문은 다음 담당실로 문의하십시오:

Office of Equal Opportunity, 65 Court Street, Brookyn, New York 11201, (718) 935-3320